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용인시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²⁾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의결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사전심사에서 승진예정인원(결원) 대비 2배수의 승진후보자를 추천하면 임용권자가 최종 결정하여 승진임용하는 방식으로 2015. 12. 28.까지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사를 부적정하게 운영³⁾하여 왔다.

2)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배수 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결원의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심사·의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법제처 13-0093, 2013. 4. 26.)

3) 용인시 2015년 인사운영 기본계획(2014.12.)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6급 이하의 직급으로의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를 결원 수 대비 2배수로 추천하던 것을 결원 수 대비 단수의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2015. 12. 29.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용인시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결과,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승진후보자 중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진임용자로 선정되었다.

조치할 사항 용인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사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